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1-12

부 산 지 방 법 원

제 2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8구합20604 취득세부과처분취소
원 고	A
피 고	부산광역시 서구청장
변 론 종 결	2018. 8. 24.
판 결 선 고	2018. 10. 5.

주 문

1. 피고가 2017. 9. 11. 원고에 대하여 한 31,009,170원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1-12

가. 원고는 2015. 1. 6. B[1]으로부터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을 매수하고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. 2. 25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, 2015. 2. 26.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는 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각 노유자시설(영유아보육시설)로 용도변경을 하였다.

나. 피고는 원고가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5. 1. 6.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, 농어촌특별세, 지방교육세 등(이하 '취득세 등'이라 한다)을 감면해 주었다.

다.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'C 어린이집'(이하 '이 사건 어린이집'이라고 한다)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자 2017. 3. 31. 사업시행자인 D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.

라.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7. 10. 24. 법률 제14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178조 제2호에 따라 2017. 9. 11.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받았던 취득세 27,541,020원, 지방교육세 2,312,100원, 농어촌특별세 1,156,050원을 각 부과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하였다.

마.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, 조세심판원은 2018. 1. 23.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.

1)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실제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B의 전 소유자인 E으로부터 직접 이전받았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1-12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, 을 제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증인 B, E의 각 증언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매수한 다음 2015. 4. 6. 대표자 변경인가를 받았으나,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매수하기 이전부터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, 원고 역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서 원고는 대표자 변경인가를 받기 이전인 2015. 3. 1.부터 직접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의 취득세 추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.

나. 관계 법령

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1) 인정사실

가)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2015. 2. 중순경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새로운 보육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F, G, H을 면접한 다음 2015. 3. 1.부터 위 3명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채용하였다.

나) 또한 원고는 학부모들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3월 일정을 안내하기 위한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, 위 가정통신문에는 2015. 3. 2. 입학식 안내 및 선생님 소개(원장 : 원고, 부원장 : G)가 기재되어 있었고, 2015. 2. 28. 신학기 직전 이 사건 어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1-12

린이집 학부모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으며, 2015. 3. 1.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신학기를 시작하였다.

다) 원고는 2015. 4. 6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시설명칭 'C 어린이집', 시설종별 '민간보육시설', 대표자 '원고', 원장 'G', 정원 '49명'으로 하여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인가를 받았고, 2015. 4. 7.에는 'C 어린이집'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, 같은 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 대표자 E은 폐업신고를 하였다.

라) 원고는 2017. 3. 2. 피고에게 어린이집 휴지신고(휴지기간 2017. 3. 9. ~ 2018. 3. 8.)를 하여 2017. 3. 9. 수리되었다.

마)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0. 8. 13. E이 전 소유자 I으로부터 매수할 당시부터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, 2014. 1. 경 E이 B에게 이를 매각하였으나 B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였으며, 2015. 1. 6. B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던 원고에게 매각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는 2015. 2. 25. E으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이루어졌다.

바) 원고와 B은 2015. 2. 27.자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, 위 합의서에는 '원고가 B에게 2015. 2. 28. 지급하기로 한 잔금 306,000,000원을 2015. 9. 30. 지급하고, C 어린이집 운영권은 2015. 3. 1.부터 B이 원고에게 인수인계키로 한다'고 기재되어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0호증,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(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증인 B, 증인 E의 각 증언, 변론 전체의 취지

2) 판단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1-12

가) 관련 법리 등

(1)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 ·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'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·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'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'직접 사용'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 ·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그 취득세가 면제된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 추징 사유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의 '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'이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의 설치 · 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나) 판단

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감면규정의 취지는 영·유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에 혜택을 주어 보다 많은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어린이집의 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인 점, ② 위 감면규정은 '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 · 운영하기 위하여'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그 주체를 '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'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, 그 운영자로서 보육시설 인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, ③ 원고는 어린이집을 운영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1-12

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매수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고,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용도를 '제2종 근린생활시설'에서 '노유자시설(영유아보육시설)'로 용도변경을 하였던 점, ④ 통상 어린이집 신학기는 매년 3. 1. 시작하는데, 원고는 2015. 3. 1. 신학기 시작 이전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한 보육교사의 채용, 신입생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등을 진행하였고, 2015. 2. 27. 전 소유자인 B과 사이에 'C 어린이집' 운영권을 2015. 3. 1. 부터 B이 원고에게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5. 3. 1.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휴지신고가 접수된 2017. 3. 9. 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 · 운영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.

다)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최병준

판사 안희경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1-12

판사 조연수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1-12

별지 1

부동산 목록

1. 부산 서구 J 대 370㎡

2. 부산 서구 J 가동

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노유자시설(영유아보육시설)

 1층 107.75㎡

 2층 97.31㎡

3. 부산 서구 J 나동

 목조, 아연판 및 와가 지붕 단층 각 노유자 시설(영유아보육시설) 36.69㎡. 끝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1-12

별지 2

관계 법령

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5. 1. 6.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2조(정의)
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8. "직접 사용"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
제19조(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)

①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(이하 이 조에서 "유치원등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

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7. 10. 24. 법률 제14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178조(감면된 취득세의 추징)

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2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■ 영유아보육법

제13조(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)

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1-12

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제5조의2(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)

①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, 어린이집의 종류·명칭·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끝.